

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거 공고

정관 및 선거관리규정, 이사회와 총회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
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출할 임원: 이사 15명(이사장 1인 포함) / 감사 2명

2. 선거인 자격(선거관리규약 제2조):

-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(대의원총회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)에 등재된 자

3. 선거일 : 2018년 2월 24일(토)

4. 후보등록

㉠ 후보자격

: 정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한 조합원. 단, 정관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추천은 예외.

: 정관 제46조[임원의 결격사유]에 해당하지 않는 자.

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

2. 한정치산자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.

㉣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㉤ 후보 등록서류: 임원입후보자등록서, 임원입후보추천서, 임원후보승낙서, 확인서, 서약서

※이중추천 금지(선거관리규정 제13조).

㉥ 접수장소 : 조합사무실(대덕 : 법1동 282-7번지 3층 / 둔산 : 탄방동 735번지 2층) ☎ 638-9053

㉦ 접수시간 : [평일] 오전9시 ~ 오후5시 [토요일] 오전9시 ~ 오후1시 [공휴일]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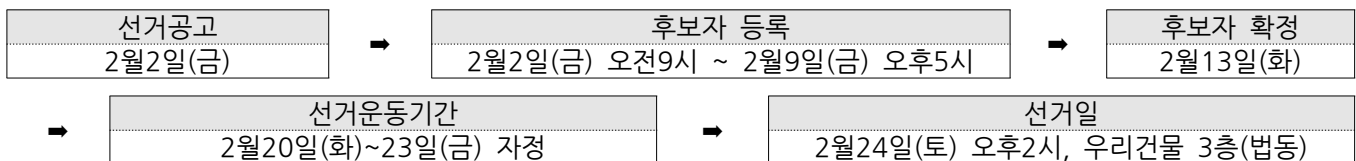
5. 선거운동 방법

- 선거관리규약 제4조에서 제한한 내용 이외의 모든 선거운동은 가능

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,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, 향응,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·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.

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.

6. 선거일정



2018년 2월 2일

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이원표

